

제 700 호
1979. 2. 2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정상천
편집 : 문화공보관 김인동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
전화 75-0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1313호 : 서울특별시아취및육교사용토징수조례	3
제 1314호 : 서울특별시새조례중개정조례	4
◎ 고 시	
제 71호 : 1979년도서울특별시하천토석, 사력채취로고시	5
제 72호 :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결정	5
제 73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	5
제 74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지적승인	6
제 75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	6
제 76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	7
제 77호 :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지적승인	7
제 78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인가고시	8

<이면 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1353

공 고	
제 44 호 : 관수용하천관재채워허가예정지지정공고	10
제 45 호 :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	10
제 46 호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및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11
제 47 호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및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11
제 56 호 (청동구공고) : 공인개작공고	12
예 규	
제 381 호 : 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요강개정	14

조 **배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아취 및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친 ㉠

1979년 2월 20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313 호

서울특별시 아취 및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광화문 아취와 서울특별시내 일원에 설치된 육교의 홍보물을 부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용자) 아취 또는 육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가 신청서에 홍보물의 도안 (문안, 규격, 색채표시) 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 조 (허가 의 범위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취 및 육교의 사용을 허가한다.

- 1. 정부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의 행사 홍보
- 2. 범시민적인 홍보

3. 문화예술의 장달을 위한 행사 홍보
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항

② 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 때에도 공익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선납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 아취와 육교의 사용기간과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이 하고,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다만 사용자가 허가기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납한 사용료는 2분의 1 상당액에 한하여 이를 반환한다.

제 5 조 (사용료 의 감면)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 6 조 (벌칙) 제 2 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취나 육교를 사용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제 7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

더 시행한다.
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에 허가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아취 및 육교사용료산정기준표

구분	1 회 사용기간	1 회 기본사용료	초과사용료 (매 1 일당)	비 고	
광화문아취	10 일 이내	200,000 원	20,000 원	1) 1 회 사용은 사용목적의 양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. 2) 광고판의 규모는 목적물의 난간높이와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. 3) 보도 및 차도육교 등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
보도육교	1 급 지	7 일 이내	20,000 원		2,000 원
	2 급 지	10 일 이내	10,000 원		1,000 원
차도육교	1 급 지	7 일 이내	40,000 원		4,000 원
	2 급 지	10 일 이내	20,000 원	2,000 원	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 세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
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㉔
 1979년 2월 9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314 호

서울특별시세 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4 조 (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

정 기준일) ①취득세의 과세표준 은 법 제 111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.

②영제 80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, 건물 및 선박의 과세 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 일과 7월 1 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1 호

1979 년도서울특별시하천토석, 사력 채취로고시

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 등 징수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1979년도 하천 토석, 사력 채취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.

1979.2.16.

서울특별시장

하천 (한강) 토석, 사력 1㎡당 채취로

모 래 : 310.73 원

자 갈 : 345.00 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2 호

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)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집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2.17.

서울특별시장

결 정 조 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여객자동차정류장	도봉구창동 665 의 4 호	2,653 ㎡	영권여객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3 호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

1. 서고시 제 646 호 (78.12.11) 로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결정된 계기동 135-90 의 1 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2. .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제기시장	제기동 135-90의 1필	323평	기 개설허가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4호

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지적승인

1. 서고시 제 1호(79.1.4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전설부고시 제 41호(77.3.16)

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2. .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내역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공용의 청사	답십리동 471-6 일대	826	대신편물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5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

1. 서고시 제 56호(79.2.6)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된 장안동 147의 6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
제 13조 및 전설부고시 제 41호(77.3.16)의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2. .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장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강안동시장	강안동 14가 일대	3,0명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지적승인

1. 동대문 관내의 학교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(79.2.6) 에 의해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 결정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

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관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2. .

서울특별시

가. 학교지적승인 내역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정화여자중 상업고등학교	계기동 293 번지일대	5,968 (1,805.3명)	기존 학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7 호

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
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 제 232 호 (77.12.1) 로 결정고시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

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위임사 함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지하철본부 및 판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2.19.

서울특별시

고속철도지적승인조서

시설명	구분	연장	시점	종점	비고
고속철도	10	1,060	행당동 63-11	성수동	

고속철도부대시설지적승인조서

시 설 명	목 원	연 장	면 적	위 치	비 고
성동교정차장	16	170	2,720	성수동 1가 656 일대	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
제 회 인 가 고 시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452 호
(78.11.18)로 실시 계획 공람
공고된 신우이 국민학교 신축을 위
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
422-2의 11 필지의 도시계획사업
(학교) 실시 계획을 도시계획법
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
제 41 호 (77.3.16)에 의거 실시
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
와 서울시 교육위원회 관재과에
각각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
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2.20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: 도봉구 쌍문동

422-2 의 11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

도시계획사업 (학교)

서울 신우이 국민학교 신설

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

13,593㎡ (4,112 평)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설명 :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착수에정일 : 사업 실시 계획
인가 즉시

2) 준공예정일 : 착수일로부터
2 년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
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
권이외의 권리명세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
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학 교 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비 고
서울신우이	도봉구	422-2	임	949 평중 650 평	
국민학교	쌍문동	-9	"	750 평중 640 평	
		424-5	"	696 평중 520 평	
		500-2	잡	242 평중 180 평	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비고	
		501-2	집	242평중 48평		
		422-4	임	1,007평중 830평		
		-5	"	617 " 560평		
		424-6	"	127 " 104평		
		-7	"	218 " 210평		
		500-3	전	185 " 160평		
		501-3	잡	150 " 125평		
		424-20	도	103 " 85평		
계		12 필		4,112평 (13,593㎡)		
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인 주소 설명						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주소설명	이해관계인 주소, 설명
서울 신우 이국 민학 교	도봉구 향문동	422-2	임	949평중 650평	중구대명로 1가	-
		-9	"	750평중 640평	61-21 권철현	-
		424-5	"	696평중 520평	"	-
		500-2	잡	242평중 180평	"	-
		501-2	"	48평	"	-
		422-4	임	1,007평중 830평	용산구한남동 746-9 성삼영	○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중구남대문로 2가 111-1 주식회사 한 국상업은행 ○근저당 설정 중구남대문로 1가 14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주소성명	이해관계인 주소, 성명
서울신우이공대학교	도봉구 상문동	422-5	임	617평중 210평	용산구 한남동 746-9 "성상영	주식회사 조흥은행 ○근저당권 설정 중구남대분로 2가 10-1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
		424-6	"	127평중 104평	"	" ○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주식회사 국상업은행
		-7	"	218평중 210평	"	" ○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농은행
		560-3	전	185평중 160평	"	"
		424-20	도	150평중 125평 103평중 85평	서울특별시	"
		계	12필	4,112 평	13,593 평	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4 호

판수용 하천골재 채취허가 예정지 지정공고

서울특별시 '79년도 판수용 한강 하천골재 채취허가 예정지물 서울특별시 하천 및 공유수면내 골재채취허가업무처리 지침 제 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함.

1979.2.16.
서울특별시장

가. 채취허가 예정지의 위치
광진교 상류 500미터지점 - 1,800미터 구간내 한강

나. 허가예정량
서울특별시 판수용 400,000 평

다. 허가 예정기간
1979.2 - 1979.12.31

라. 도면열람 : 친호출장소 게시판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45 호

제 2종전기공사면허취소공고

전기공사법 제 31조 제 1호의 사유로, 전기공사면허가 취소되었기 동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9.2.15.
서울특별시장

종 별	면허번호	업 제 명	대표자	소 재 지	면허 실효일자	사 유
제 2 종	147	동성권업사	최재희	중구 을지로 5가 274-15	79. 2. 15	시설미비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5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실시 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시 고시제 276 호 (77.8.9)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 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중 북천 간선하수도 제 3차 복개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,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의규정에 따라 14 일 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, 본 사업에 수용되는 토 지 및 건물의 수용은 없으므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, 기타 이 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79. 2. 17.

서울특별시장

(공람개요)

1. 사업장의 위치:
기 점 : 성동구 중곡동 39-51

종 점 : 성동구 중곡동 125-11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
명칭 : 중곡천 간선하수도 제 3차 복개공사
3. 사업의 규모 : 암거 3.5×2×2 편 = 430.20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 : 1973.3 - 1979.9.30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 외 권리의 명색 : 없음
7.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: 없음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7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시 제 250 호 (78.5.29)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 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 동교동 간 선 하수도 제 4차 복개공사의 실시

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며 본 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의 수용은 없으므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.

1979. 2.17.

서울특별시장

(공람개요)

- 1. 사업장의 위치 :
기점 : 마포구 망원동 338-41 호
종점 : 마포구 망원동 396-32 호
- 2. 사업의 종류와 명칭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
명칭 : 동교동 간선 하수도 제 4차 공사
- 3. 사업의규모
암거 4×2.5×3면 = 285
기타부대공 1식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5. 사업착수 및 준공 :
1979.3 - 1979.8.30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

권리명세 : 없음
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: 없음

◎ 성동구공고제 56 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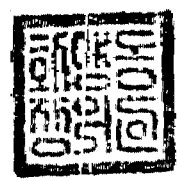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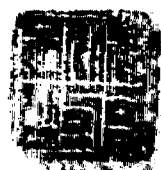



공인개각 공고

관인규정 제 8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당 구 화양동 및 군자동의 공인용 개각, 1979. 2.26. 09:30부터 사용을 승인하였기 동조례 9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79. 2.19

성 동 구 청 장

- 1. 개각공인명칭 : 화양동장 직인 및 계인
군자동장 직인 및 계인
- 2. 사용개시일시 : 79. 2.26. 09:30
- 3. 공인인영 : 별첨
- 4. 폐기공인명칭 : 화양동 및 군자동장 직인 및 계인
- 5. 폐기일자 : 79. 2.24
- 6. 폐기공인인영 : 별첨

인 인 인	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</p>	인 인 인	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</p>
공인명	화양동장적인및계인	공인명	1979년 2월 26일 변경
인 인 인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</p>  	인 인 인	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</p>
공인명	군자동장적인및계인	공인명	1979년 2월 26일 변경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예 규</div> <p>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 규정용</p>		<p>다음과 같이 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9. 2. 21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 장</p>	

○ 서울특별시예규제 381 호

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요강개정

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 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회계사무취급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(이하 " 시 " 라 한다) 에서 행하는 시설공사, 물품구매, 가공, 수리, 운송, 보관, 입차 및 용역의 계약과 경비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회계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경리관의 보조구분) 경리관 (분임경리관) 의 보조는 주관과장 (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실과과장, 이하 같다) 과 회계 1 과장 (계약을 담당하는 과의 장) 으로 한다.

제 3 조 (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협조) 주관국·과장은 사업시행, 공사구역 내의 공공 또는 공용시설물, 지장물의 철거, 이전, 토지 수용이나

각종 경비, 시채보조금, 보상비의 지출등에 있어 관제국·과장과 사전 협의 및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계약을요하는사업의일반지침

제 4 조 (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)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, 예산 및 예산배정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주관과장은 지방재정법 제 61 조 규정의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따로 지정된 기일이 없는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 1 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.

- 1.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 계약 소요일수 ; 20 일
- 2. 제한경쟁계약소요일수 ; 27 일
- 3.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원가계산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; 30 일

제 5 조 (계약방법의 명시) 주관과장은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

<p>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성격, 규모,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 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 6 조 (계약심사) ①주관과장은 당해 사업이 제한 경쟁 또는 지명 경쟁이나 수의 계약으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서물특별시 계약심사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계약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②전항의 경우 상급관청, 중앙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승인이나 협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사 요구전에 주관국·과장이 승인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.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 1 호 내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계약심사 의뢰서를 미리 계약심사 위원회 위원장 (참조 회계 1 과장)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관국·과장 (청·소 본부의 장) 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.</p>	<p>⑤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뢰 안전에 대한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 조 (계약이행 기간의 연기) ①주관국·과장은 납품 또는 준공의 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 사유에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귀책소제와 지체상금 징수 여부를 명백히한 준공 (납품) 기한 연기 의뢰서 (서식 제 5 호) 에 연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리관 (분임경리관)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경리관 (분임경리관) 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준공 (납품) 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 8 조 (대리입찰 참가 제한)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 입찰사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계기하는자만을 참가시켜야 한다. 1. 법인은 정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또는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소지한자로서 정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된 자 2. 비법인은 대표자 또는 본인</p>
--	---

제 3 장 물품구매 계약

제 9 조 (물품구매심사) 단위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 적정여부에 대하여 물품 구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1. 시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없거나 다른 물품의 매입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려품, 실용신안 등록품
2. 단일 생산품
3. 국산 대체불가능 품목으로서 내자로 구입하는 수입품
4.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및 제조
5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과 주요물품

제 10 조 (물품구매심사 위원회의 구성) ① 물품구매 심사위원회 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는 본 청에서는 국별로 청·소(3급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는 단위 기관별로 구성한다.

② 심사위원장은 주관국장이 되고

심사부위원장은 주관과장이 되며 심사위원은 주관국의 과, 계장 3인이 상이 된다. 다만, 청·소에서와 심사위원장은 단위 기관장이 된다.

제 11 조 (물품구매 심사위원회 운영)

① 주관과장은 심사대상의 구매요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구서 (서식 6호)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주관과의 담당 계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등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나 다른 국·과의 직원을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③ 부외 안전의 심사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심사결정서 (서식 7호)를 구매요구서 (계약심사위원회 부외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사 의뢰서)에 첨부하여 경리관(분임 경리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구매요구) 주관과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달구매 품목

<p>중 저장품에 대하여는 조달가격표를 참조하여 조달청 의뢰구매 표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기본사항</p> <p>가. 구매목적 및 용도</p> <p>나. 구매방법 (일반경쟁, 제한경쟁,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, 단가, 총액 희망수량)</p> <p>다. 납품기한 및 장소</p> <p>라. 검사수단 (관능, 이화학시험)</p> <p>마. 하자보수 보증 기간</p> <p>바.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항 및 계약 특수조건</p> <p>사. 지불비목</p> <p>아. 산출기초 조사서 (별봉)</p> <p>자. 구입명세</p> <p>2. 완제품 구입</p> <p>가. 구체적인 규격</p> <p>나. 정부물품분류표에의한표준설명</p> <p>다. 미더벌에의한 단위</p> <p>라. 기타 건품이나 카다목제시</p> <p>3. 제조 가공품</p> <p>가. 시방서</p> <p>나. 설계도면</p> <p>다. 원가계산서로 작성된 내역서 (회계예규 1201.04-80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순차 제</p>	<p>5조 내지 제 10 조)</p> <p>4. 수입관품</p> <p>가. 수입원</p> <p>나. 수입물품 원가 계산서</p> <p>다. 기타 시장제고 유통 여부나 참고자료 제시</p> <p>5.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1항제 1호 (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조 제 2호 가. 나. 다 목)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자료</p> <p>6. 운송보관</p> <p>가.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</p> <p>나. 운송수단 (차종)</p> <p>다. 운송조작비, 적용구분 (용적 또는 중량차, 시간제및거리제)</p> <p>라. 보관수단 및 장소</p> <p>7. 수 리</p> <p>가. 수리명세</p> <p>나. 수리단위별 내역서</p> <p>8. 임 차</p> <p>가. 임차대상</p> <p>나. 임차기간 및 장소</p> <p>다. 임차조건</p> <p>제 13 조 (산출기초조사서작성) ① 주관과에서 산출기초 조사서 (서식</p>
---	---

제 8 호)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작호에 의한다.

1.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5 조

규정

2.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4 조의 2

규정

② 산출적용·가격은 조사가격을 참작하여 산출하고 산출기초 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국장이 한다. 다만, 과장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이 확인한다.

제 14 조 (예정가격조사서 작성) ① 경리관 (분임경리관)을 보조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 13 조에서 규정한 산출기초 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출기초 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 실제 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 제산율하여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1 항제 4 호 내지 제 8 호, 제 10 호 및 제 18 호에 해당하는 사항일 때는 예정가격 조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주관국·과의 산출기초 조사서에 의거 산출서만을 작성한다.

제 15 조 (예정가격의 결정) 경리관 (분임경리관)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3 조, 제 94 조, 제 95 조, 제 116 조의 2, 제 116 조의 4, 제 117 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5 조 내지 제 8 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국과장이 작성한 산출기초 조사서와 회계 1 과 (계약을 담당하는과)에서 재 확인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 4 장 시설공사 도급 계약

제 16 조 (실제심사) 주관과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지침서에 의하여 실제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일 공사 또는 연차 공사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실제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한 실제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17 조 (실제도서의 내용 및 기준)

① 실제도서는 공사설명서, 지방서, 내역서, 도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의 2 부를 작성하되 금액표기 내역서는 통합하여 첨부하여

야 한다.

②공사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공사 시방서는 공사 시공중 야기될 교통문제,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 구분과 특수작업, 실제 변경,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④부득이한 사유로 단일공사를 동일 회계연도내에 시기적 또는 물량적으로 분할 시행하거나 연차 시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미리 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1 차 공사 시행시 총 공사 예정금액을 동시에 실제부기 하여야 한다.

⑤실제 내역서의 종과 증가가격은 정부 표준물셈에 의하여 산출하되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표, 자재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5 조 및 계약사무 처리 규칙 제 4 조의 2 에 의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시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한다.

제 18 조 (실제상의 책임구분) 실제

내역서중 기술적, 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 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,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회계 1 과 (계약을 담당하는과)의 관계 공무원이 각각 그 책임을 진다.

제 19 조 (시설공사 시행) ①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실사 결과 통보서와 실제도서, 실제실사 위원회 의견서, 소요판급자재 확보 조서등을 첨부 경리관 (분임경리관)에게 승부한다.

1. 공사명
2. 예산과목
3. 계약방법
4. 준공기간
5. 하자 보증기간

년 * 비용조문 조 항)

6. 기타사항

②전항의 규정에 있어 판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판급자재 수급 계획서와 구매 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계약의 체결) ①경리관 (분임경리관)은 주관과장으로부터 공사시행 동의서를 이송받은 때에는

는 정한 계약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 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 내역서, 예정공정표, 현장 대리인계를 첨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입찰내역서를 계약 내역서로 갈음한다.

제 21 조 (계약서 부분송부)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분 1 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설계, 측량, 조사의 용역계약

제 22 조 (도급계약의 적재) ①설계 용역의 도급 계약은 특정의 기술, 학술이나 특수한 경험과 장안등을 요하는 사안으로 시의 공무원으로서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.

②측량, 조사등 용역의 도급 계약은 업무량의 과다로 시의 공무원 으로서는 소정기일내에 성취할 수 없는 경우와 학술, 기술, 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사안에 한 한다.

제 23 조 (파업 지시서 작성) ①설계,

조사, 측량등 용역 계약에는 계약 내용 달성에 필요한 파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기타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 외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 6 장 경비의 지출

제 24 조 (지출의 원칙) ①경리관 (분임경리관) 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 결의서에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지출원인 행위부에 등재한 후 지출원에게 이송하여 지출 요구한다.

②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등의 정미는 주관과장이 납입고지서, 납입 통지서, 청구서 또는 지급조서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경리관 (분임경리관) 의 확인을 받은후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한다.

③시채, 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 및 재산매입금의 연부금, 보조금, 교부금, 사회 보장적 수혜금등의 지출은 경리관 (분임경리관) 의 확인을 받은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출원에게 요구 한다.

다만, 대상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

가 국고보조 및 기채, 교부금, 전입금, 대여금, 기부금등일 경우에는 당해 재원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.

제 25 조 (지출 기일명시) 시채, 차입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 및 재산매입 내금의 연부금의 지출은 지출 도래 1월전에 주관과장이 지출 기일을 명시하여 지출 요구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월별지출 계획서 작성)

①공사구역내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월거 및 이전 보상비와 토지 수용의 대가 지출은 주관과장이 공사집행 예정 공정표를 참작하여 월별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주관과장은 전항의 계획서에 의한 매월 보상비 지출 소요액을 그 전월 20일까지 지출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개산금, 선금금, 전도자금의 지출) ①개산금, 선금금 및 전도자금을 지출 하고자 할 때에는 경리관 (분임경리관) 및 회계 2과장 (지출을 담당하는 과의 장) 과 협의할 하여야 한다.

②전항 규정의 지출 결의서 상단에는 개산금, 선금금, 전도자금 등의 구분을 표시 (고무인) 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전도자금의 정산)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8 조 규정에 의하여 전도된 자금은 집행한 후 그 정산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발령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계약의 체결 지출 요구등은 이 규정에 의한것으로 본다.

부칙제 1 호 >

시설공사(제한, 지명) 경쟁계약 심사위퇴서

1. 공 사 명
2. 계약의 목적
3. 공사기간
4. 공사개요
5. 공사위치
6. 회계명 및 예산지번 과목
7. 공사집행 현황
 - 가. 총공사 규모
 - 나. 기 집행액
 - 다. 책정된 예산액
 - 라. 급회 배정액
 - 마. 급회 집행액 (총 공사비 및 도급액)
 - 바. 집행잔액
 - 사. 급후 집행계획
8. 판급자재 내역
9. 제한(지명) 경쟁의 구체적인 사유
10. 적용법 조문(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 처리규칙)
 1. 설계자 직. 성명
 2. 설계심사자 직. 성명
 3. 감독공무원 직. 성명
 4. 첨부서류
 - 가. 공사현장 위치도(약도)
 - 나. 잡비율 적용표
 - 다. 공사에정 공정표
 - 라. 지명업체명단(지명업체 선정기준 기재)
 - 마.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참고사항

<서식제 2호>

(용역) (제한) 경쟁계약 심사의뢰서
(물품제조구매) (지명)

1. 사업명
2. 계약의 목적
3. 사업(납품)기한
4. 사업(납품)개요
5. 납품장소
6. 회계명 및 예산지번과목
7. 계약금액
8. 품명·규격·수량 및 단가
9. 관급자재 내역
10. 제한(지명)경쟁의 구체적인 사유
11. 적용법규문(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)
12. 첨부서류
 - 가. 물품제조의 경우 사양서(도면·사양 설명서)
 - 나. 지명업체 명단(지명업체 선정기준 기재)
 - 다. 물품(구매) (제조) 심사결정서 사본
 - 라.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참고사항

< 서식제 3 호 >

시설공사 수의계약 심사의뢰서

1. 공 사 명
2. 계약의 목적
3. 공사기간
4. 공사개요
5. 공사위치
6. 회계명 및 예산지번호
7. 초년도 공사 (1 차공사) 계약일자
8. 공사집행 현황
 - 가. 총공사 규모
 - 나. 기 집행액
 - 다. 책정된 예산액
 - 라. 금회 배정액
 - 마. 금회 집행액 (총공사비 및 도금액)
 - 바. 집행잔액
 - 사. 금후 집행계획
9. 관급자재 내역
10.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
11. 계약대상자의 주소·성명
12. 적용법조문 (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계약사부처리 규칙)
13. 설계자 직·성명
14. 설계심사가 직·성명
15. 감독공무원 직·성명
16. 첨부서류
 - 가. 공사현장 위치도 (약도)
 - 나. 잡비율 적용표
 - 다. 공사에정 공정표
 - 라. 별표 1의 해당서류
 - 마.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참고사항

<별표 1> 시설공사 수의계약 심사의뢰서 첨부서류			
지 용 법 조 문	첨 부 서 류	확 인 자	비 고
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12조 제 1항 제 3호	○ 계약대상자가 비밀공사를 시 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할만한 증빙서류 사본 1부 (예: 보안진단필증 등)	담당공무원	
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조제 1항제 1 호의 "가"	○ 전자공사와의 하자관계를 상 세히 표시한 도면 1부 (하자 책임 한계의 구분이 곤란한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) ○ 전자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	{본청: 소관과장 산하기관: 분임 경리관 담당공무원	
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조제 1항제 1 호의 "나"	○ 현재 시공중인 공사와의 동 일 현장 (단일진입로) 임을 상세히 표시한 도면 1부 ○ 현 시공중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	{본청: 소관과장 산하기관: 분임 경리관 담당공무원	
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조제 1항제 1 호의 "다"	○ 특허공법임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(예: 특허원부의 등본 1부 등)	담당공무원	

< 서식제 4 호 >

(용역) 수의계약 심사의뢰서
(물품제조구매)

1. 사 업 명
2. 계약의 목적
3. 사업 (납품) 기한
4. 사업 (물품) 개요
5. 납품장소
6. 회계명 및 예산지번호목
7. 계약금액
8. 품명 · 규격 · 수량 및 단가
9. 공급자재 내역
10.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
11. 계약대상자의 주소 · 성명
12. 적용법조문 (예산회계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)
13. 첨부서류
 - 가. 물품제조의 경우 사양서 (도면 · 사양설명서)
 - 나. 별표 2 의 해당서류
 - 다. 물품 (구매) (제조) 심사결정서 사본
 - 라.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참고사항

<별표 2 >			
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심사의뢰서 첨부서류			
적용법조문	첨부서류	담당인	비고
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 조제 1항제 2 호의 "가"	최근 1개월이내 발행된 당 해특허원부 또는 실용신안등 특원부·의장등부 원부의 등본 1부		
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 조제 1항 제 2 호의 "나"	최근 1개월이내 관계관서에 서 발급한 단일생산증명 원본 1부		
예산외계법시행령 제 1.12 조제 1항 제 2.3 호	단체적 수의계약참모인 사실 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 당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등 기부등본·사본 및 조합원별 작업비 분원칙과 조합원별 배분계획	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	
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 조제 1항 제 1 호의 "라"	송공사 및 금차발주 공사들 합계 상세히 표시한 도면 1부 전차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	{ 본청 : 소관과장 산하기관 : 분임경리관 담당공무원	
계약사무처리 규칙 제 39 조제 1항 제 1 호의 "마"	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공 급계약서 사본 1부	담당공무원	

< 서식제 5 호 >

준공 (납품) 기한 연기조치 의뢰서

1. 시설공사 (용역) 내용

- 가. 공사 (용역) 명
- 나. 도 급 자
- 다. 도 급 액
- 라. 계약년월일
- 마. 착공년월일
- 바. 준공기한

2. 위공사 (물품) 의 준공 (납품)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준공연기 기한
- 나. 연기사유 귀책소재
- 다. 지체상금 부과여부 (부과 · 미부과)
- 라. 연기사유

첨부 연기사유 증거자료 부

년 월 일
장

서울특별시경리관 귀하

<시칙제 6 호>

물품 [구매] 제 조 심사요구서

197

수신 : 심사책임관 귀하

다음과 같이 물품구입 및 제조 기타에 관하여 심사요구 하오나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품 명
- 2. 계약방법
- 3. 내 용

품 명	규 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비 고

<위식재 7 호>

국 심사결정서

건명 :

구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정함.

결 정 내 용

주 제	결 의 사 항	비 고

197

심사책임관 (인)

부책임관 (인)

심사관 (인)

심사관 (인)

